

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612
----------	------

2021년 9월 8일  
교육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1년 8월 11일, 이호대 의원
2. 회부일자 : 2021년 8월 18일
3. 상정일자
  - 제302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 
(2021년 9월 8일 상정, 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이호대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교육감에 대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도록 하고, 점자 및 자막 자료 등의 교육자료를 개발·보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에 반영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규정함(안 제8조의2제3항 신설).
- 점자 및 자막 자료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른 교육자료의 개발·보급을 규정함(안 제8조의2제4항 신설).

### 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범)

#### 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11일 이호대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612호로 발의되어 2021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원격수업시스템 구축·운영과 교육 자료 개발·보급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장·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원활한 학업 수행 지원을 위해 발의되었습니다.

#### 2. 주요 검토의견

##### 가.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

- 지난 2020년 10월 20일 국회에서는 장·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원활한 학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을 실시하도록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.<sup>1)</sup>
-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1년 4월 20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하여금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 원격수업시스템을

1) 제25조(순회교육 등)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·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0. 20.>

구축·운영하도록 하고, 점자 및 자막 자료 등 교육 자료를 개발·보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」을 개정하였습니다.<sup>2)</sup>

-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장·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원격수업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생각됩니다.

## 나. 주요 조문별 검토

- 안 제8조의2 제3항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장·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
제4항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원격수업 시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라 점자 및 자막 자료 등의 교육 자료를 개발·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‘꿀맛무지개교실’을 통해 건강장애·요보호 학생<sup>3)</sup>들에게 원격수업 방식으로 교육을 제공하여 학습 지체 및 유급 문제를 해소하고 있으나, 정기적인 수술 등으로 결석이 불가피한 그 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도 체계적인 원격수업 제공의 필요성이 있어왔습니다.

2) 제20조의2(원격수업의 운영)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(이하 “원격수업”이라 한다)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·운영해야 한다.

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위하여 점자 및 자막 자료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른 교육자료를 개발·보급해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1. 4. 20.]

3) - 건강장애학생 :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

- 요보호학생 : 화상 및 교통사고 등 심각한 외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요구되는 학생

[표] 2021학년도 끝맛무지개교실 운영 현황4)

- 기간 : 2021. 3. 8.(월) ~ 12. 31.(금) ※ 수업일수: 200일(1학기 103일, 2학기 97일)
- 대상 :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초·중·고 재학 중인 **건강장애·요보호 학생**
- 학생현황 (2021. 7. 13. 기준, 단위 : 명)

학교급 기간	초	중	고	계	비고
3월	90	76	67	233	
4월	100	85	68	253	
5월	104	86	75	265	
6월	110	92	77	279	
7월	111	93	79	283	건강장애 230명, 요보호 53명

○ 교육과정 운영 현황

- 수업 시수(주당) : 초등1~2학년 6시간, 초등 3~6학년 12시간, 중등 12시간
- 수업 운영 :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
- 교육 과정 : 국어, 영어, 수학, 사회, 과학, 미술(초등)
  - 초등학교 1, 2학년은 통합교과(6단위) 운영
  - 고등학교는 계열 구분 없이 통합교육과정 운영
- 강사 : 총 14명, 초·중등 정2급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
  - 파견교사 : 초등 교사 2명
  - 원격강사 : 초등 3명, 중등 9명(국어 2명, 수학 2명, 영어 2명, 사회 2명, 과학 1명)

학급 수	강사 수	월 평균 이용학생 수	개별학생 평균 이용일
14	14	235.3	50.03

-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, 장·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원활한 학업 수행 지원을 위해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.
-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이견이 없음을 밝혔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12601, 2021.8.19.)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4)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'특수교육 연차보고서'(2021.6.1.)

V. 토론요지 : 없음.

VI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.

VI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.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원격수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·운영해야 한다.

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원격수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점자 및 자막 자료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른 교육자료를 개발·보급해야 한다.

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의2(순회교육·원격교육 실시) ①·②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8조의2(순회교육·원격교육 실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원격수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·운영해야 한다.</u></p> <p><u>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원격수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점자 및 자막 자료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른 교육자료를 개발·보급해야 한다.</u></p> <p><u>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.</u></p>